

환경전담부서 왜 필요한가

— 다른 부서와 동등한 대우, 기회 쥐야... —

본인은 某기업체에서 11년째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배출시설관리인(일명 환경관리인)으로 기업체내 환경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한마디하고자 한다.

환경보전법에는 분명 각종 배출업소에 따라 배출시설관리인을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을 나는 각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기나 수질, 폐기물등의 오염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환경보전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환경관리인을 두는 것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법에 규정돼 있으니 관리인을 둔다는 遵法次元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배출업소에는 그 배출시설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배출시설에 따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관리인만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허다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 회사내에서 환경관리인의 위치는 생산활동과는 무관한 소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인으로 인식되기 일쑤이다. 더욱이 회사의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환경전담부서의 설치는 한갓 관리인들의 바램에 그치는 경우 또한 비일비

재하다.

물론 충분한 관리인을 확보하고 또 이들의 환경관리업무를 뒷받침해주도록 환경전담부서를 설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만, 문제는 환경관리에 모범적인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훨씬 많다는 데 있다.

환경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하면 할수록 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이 늘면 늘수록 산업현장에서 환경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관리인들의 일은 힘이 들수 밖에 없고, 관리인의 신분보장 역시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요근년 들어 환경관리인제도의 개선 및 관리인의 신분보장에 관한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에 명기돼 있는 기업주와 관리인의 양벌규정폐지, 기업체의 환경전담부서 설치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두문제는 바로 관리인들의 신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만큼 기업체에서 환경관리인의 위치가 어정쩡하다는 얘기도 된다.

일전에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가 이 분야에 같이 발을 들여놓은 몇몇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행사가 전국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때문이다.

모처럼만의 만남이라 반가운 자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져 갔다. 모두의 나이가 40전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일 때고, 직장도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터져 나온 얘기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는 얘기였다.

**기업체내의 환경전담부서 설치
환경관리인의 신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생산원가 절감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해 준다.**

왜였을까? 왜 이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와야 했을까? 그중 한 친구의 얘기는 입사한지 10년이 넘어 같이 입사한 다른 부서의 동기는 이미 고참과장이 되어 승진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자신은 만년 대리로 있다보니 동료 보기도 부끄럽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직을 고려중이란다. 나역시 만년대리의 입장에서 깊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승진이 더딘 것이 그들의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기업체 환경관리인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승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체의 환경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직장내에 환경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체내에 환경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으니 관리인들은 보통 총무과나 공무과 또는 품질관리과등에서 배치될 수 밖에 없고, 타부서에 몸담고 있으면서 부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환경업무이외의 타업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체내 환경전담부서의 설치에 환경관리인의 신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환경전담부서설치가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기업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환경관리를 하는 것은 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 직접적으로 배출부과금을 물지 않음은 물론 인력이나 재원활용에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품생산 원가의 절감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한 여러회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주는 환경전담부서의 설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관리모범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 확보와 함께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전담부서의 설치에 기업주의 환경보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국도 전담부서의 설치등이 기업의 고유권한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기업이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해 주었으면 한다. 지난번 환경청이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업으로 발표한 기업중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환경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어떤 회사는 단순히 명칭만 환경과로 바꾼 경우도 있고, 아무쪼록 산업공해해결에 관리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다그치지만 말고 환경전담부서의 설치에 기업과 당국이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관리인의 신분보장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S기업 G관리인)